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보장위원 결격사유의 피한정후견인 삭제〉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196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3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21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4.
- (3) 회 부 일 : 2024. 7.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

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u> 3. ~ 8. (생략) ⑤·⑥ (생략)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종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¹⁾에서

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음.

- 성년후견제로의 개편은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보임.

<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성년후견제 비교 >

성년후견제 도입 전	성년후견제 도입 후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 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12조)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들을 단순히 용어만 대체하여 정비(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동의유보 결정

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결격조항에 규정되었음.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성년후견제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심판하는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뿐,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의 자격 조건이나 인허가 사유, 임직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하지 않음.²⁾

- 참고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장애인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불합격 처분을 통지받아, 이후 헌법재판소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제1호³⁾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사회보장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2) 박준모,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제9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p.3

3) 「(구)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 2017.10.24.일부개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다만, 헌법재판소는 ① 청구인의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②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피한정후견인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 등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음(2024.4.25. 선고 2021헌마1288).

□ 개정안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명백하고 확실한 사회적 위험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⁵⁾,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성년후견제의 취지에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법제처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법에 자격시험이나 인허가 요건, 그 밖의 직무수행능력 검증 수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⁶⁾

- 개정안의 경우,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시·도지사가 위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행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분야에서 결격사유 관련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입법례를 보면, 유사한 자격에 대해서 다소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일관된 법정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예컨대,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상 자격 중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자격은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있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존치한 자격은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의료인 등이 있음.

5)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이념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기본정신이다. ……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2.4.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 등)

6) 참고로, 검증 수단·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되, 대체 결격사유 도입 등 보완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개정안은 피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취지⁷⁾에 따라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보장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도지사는 위원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행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므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려움.

문 의 처

02)6788-5497

7)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고려해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 제한하여 피후견이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

【참고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법조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5.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6.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특별자치시에 한정하며,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8.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2】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한 사례
--------------	------------------------------

소관부처	법률명	대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임원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전자서명법	공인인증기관 임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술사법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거부 사유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사업자 임원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광고판매대행자 대표자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 건설허가 등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 임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해외이주법	해외이주알선업 임원
법무부	법무사법	법무사 사무원
	변호사법	변호사 사무직원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응시
	비송사건절차법	청산인 선임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 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찰청	경비업법	경비업 법인 임원 및 경비지도사, 경비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임용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계측업 등록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제조업/유지관리업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사업 등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탱크시험자 등록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교육사
문화체육 관광부	경륜·경정법	선수출전/심판종사 등록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
	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문화재청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보존육성 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매매업자 허가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거래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임원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 임용
국방부	군인사법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참고3】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존치한 사례(국가전문자격)
--------------	--------------------------------------

연번	법률명	대상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정평가사
2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감정사
3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검량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검수사
5	항만운송사업법 제8조	검수사
6	공인노무사법 제4조	공인노무사
7	관광진흥법 제7조	관광통역안내사
8	관광진흥법 제7조	호텔경영사
9	관광진흥법 제7조	호텔관리사
10	관광진흥법 제7조	호텔서비스사
11	관광진흥법 제7조	국내여행안내사
12	관세사법 제5조	관세사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4	변리사법 제4조	변리사
15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
16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주택관리사보
17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상담사
18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지도사
19	행정사법 제6조	행정사

【참고4】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존치한 사례(기타)
--------------	----------------------------------

연번	법률명	대상
1	변호사법	변호사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 시설 종사자
3	간선급행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운송사업 면허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운영·종사
5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지정
7	수의사법	수의사
8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보미
9	약사법	약사면허, 한약사면허
10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운영·근무
11	유아교육법	유치원 설립·운영
12	의료법	의료인
13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활동지원인력
14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1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별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6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17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사회서비스 제공자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수련시설의 대표자
19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20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21	관세법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22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진단기관
23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